



# 한국로봇산업협회

수신자 로봇부문 사업자 대표

(경 유)

제 목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)에 근거하여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,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,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(별표)을 개정하려 합니다.

<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>

- 위임법령 :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
- 입법예고 : 2024.03.14~2024.04.04
- 입법효과 :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로 지정 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 시 정부심의, 보호조치 이행 등 기술보호 의무 이행
- 로봇 분야 관련 안내(요약)  
: 기존 지정된 로봇분야 3개 기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명 변경

3. 위 관련, 정부에서는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공고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

4. 주요내용 중 로봇 분야 관련 변경(안)에 의견 있으신 사업자 대표께서는 '24. 4. 3.(수)까지 직접제출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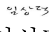
※ 제출 및 문의처 : 기획사업본부 정책팀(070-4220-0910, nanagi@korearobot.or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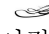
- 붙임 1.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.
- 2.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 및 매뉴얼 1부. 끝.

## 한국로봇산업협회장



수신자

담당  유기은 팀장  임상덕

사무국장  이경준

협조자

시행 기획-2024-외부공문-0080 ( 2024.03.26 ) 접수

우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8층 / http://www.korearobot.or.kr

전화 02)780-3060 / 전송 02)780-3062 / nanagi@korearobot.or.kr / 공개